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내용

2026. 06.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내용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사업시행시 유발될 수 있는 제반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 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내지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함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열람·공고

(1) 열람

- 열람기간 : 2025년 07월 10일(목) ~ 2025년 08월 21일(목)
- 열람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동 주민센터(증산동, 신사2동, 수색동, 응암3동, 서대문구청 북가좌2동)
- 인터넷 열람 : 서울시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eims.seoul.go.kr>)

(2) 공 고

- 공고일자 : 2025년 07월 10일
- 신문공고 : 세계일보, 문화일보
- 인터넷 공고 : 은평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나. 주민설명회

- 일시 : 2025년 07월 24일(목), 14:0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0(수색동 주민센터 2·3 강의실)
- 참석자

구 분	내 용
총 인원	◦ 10인
사업자 및 설계사	◦ 사업자 2인, (주)동해종합기술공사 5인, 설계사 1인
관계기관	◦ 2인(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참석주민	◦ 없음

(1) 신문광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0호

『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은평구 중산동 195번지 일대 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산동 195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12,804.2㎡
- 사업시행예정자 : 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규모 : 지하 4층/지상 29층(1,894세대), 연면적 332,624.23㎡
- 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 07. 10.(목) ~ 2025. 08. 21.(목)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주민센터(중산동, 신사2동, 수색동, 응암3동, 서대문구청 북가좌2동)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장소에 비치)
※ 전자공람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eims.seoul.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기간 내
-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작성(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 장소에 제출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팩스(02-351-5662)로 의견 제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우편을 통한 의견 제출은 불가함.

4. 설명회 개최

- 일시 : 2025. 07. 24.(목)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0(수색동 주민센터 2·3강의실)
- 개최주관 : 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참석대상 :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거주 주민 등

5. 기타사항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은 상기 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0호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12,804.2㎡
- 사업시행예정자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규모 : 지하 4층/지상 29층(1,894세대), 연면적 332,624.23㎡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 07. 10.(목) ~ 2025. 08. 21.(목)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주민센터(증산동, 신사2동, 수색동, 응암3동, 서대문구청 북가좌2동)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장소에 비치)
※ 전자공람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eims.seoul.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기간 내
-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작성(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 장소에 제출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팩스(02-351-5662)로 의견 제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우편을 통한 의견 제출은 불가함.

4.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5. 07. 24.(목)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0(수색동 주민센터 2·3강의실)
- 개최주관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참석대상 :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거주 주민 등

5. 기타사항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은 상기 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공고

서울특별시

[모집] 이웃사이 한걸음 더 쉼터

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로그인 운영문의 장애연락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평가완료사업 ▼ 사업명 ▼

검색

환경영향평가 안내

평가진행사업

평가완료사업

심의위원회

소식알림

소식알림

공지사항

공고/공람

자료실

공고/공람

HOME > 소식알림 > 공고/공람

제목	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산동 195번지 일대 ○ 사업면적: 112,804.2㎡ ○ 사업시행여건: 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항 ○ 건축규모: 지하 4층/지상 29층(1,894세대), 연면적 332,624.23㎡ ○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5. 07. 10.(목) ~ 2025. 08. 21.(목)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주민센터(중산동, 신사2동, 수석동, 응암3동, 서대문구청 북가좌2동) ○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장소에 비치) ○ 평가공람: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eims.seoul.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공람 기간 내 ○ 제출방법: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 작성(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 장소에 제출(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팩스(02-351-5662)로 의견 제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우편을 통한 의견 제출은 불가함.) 4. 설명회 개최 ○ 일 시: 2025. 07. 24.(목) 14:00 ○ 장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석동 280(수석동 주민센터 2-3강의실) ○ 개최주관: 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참석대상: 사업시행으로 직접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거주 주민 등 5. 기타사항 ○ 관저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은 상기 기간 중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명	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재협의)
평가서초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두저장 첨부파일 총 24개 (526MB) 000_표지.pdf (19KB) 001_목차.pdf (42KB) 1000_부록.pdf (151MB) 100_요약문.pdf (3MB) 200_사업의개요(완).pdf (7MB) 300_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완).pdf (579KB) 400_지역개황(완).pdf (4MB) 511_미기상(완).pdf (18MB) 512_대기질(완).pdf (41MB) 513_온실가스(완).pdf (32MB) 521_수질(완).pdf (49MB) 531_토지이용(완).pdf (40MB) 532_토양(완).pdf (20MB) 533_지형지질(완).pdf (43MB) 541_동식물상(완).pdf (17MB) 551_친환경적 자원순환(완).pdf (15MB) 552_소음진동(완).pdf (26MB) 553_위탁경관(완).pdf (26MB) 554_일조장해(완).pdf (27MB) 561_인구주거(완).pdf (102KB) 600_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분석 및 평가(완).pdf (5MB) 700_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pdf (87KB) 800_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pdf (2MB) 900_종합평가 및 결론.pdf (109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두저장 첨부파일 총 1개 (803KB) 1_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중산5).pdf (803KB)

목록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은평구의회

33°C

미세먼지 17.0/㎍/㎥ 좋음

오존 0.051ppm 보통

민원안내

주민참여

열린행정

소식알림

은평소개

분야별정보

맞춤복지

심리상담

로그인

공지사항

강척/교육

일자리

고시/공고

고시/공고

입찰공고

입법예고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은평구보

미디어소식

보도·해명

인사발령

은평소식지

은평청소년소식지

타기관소식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1230호

조회수

23

등록일

2025-07-10

담당자

유웅기

연락처

02- 351-7484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제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증산5).hwp

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zip

미리보기

주민의견 제출서.pdf

미리보기

내용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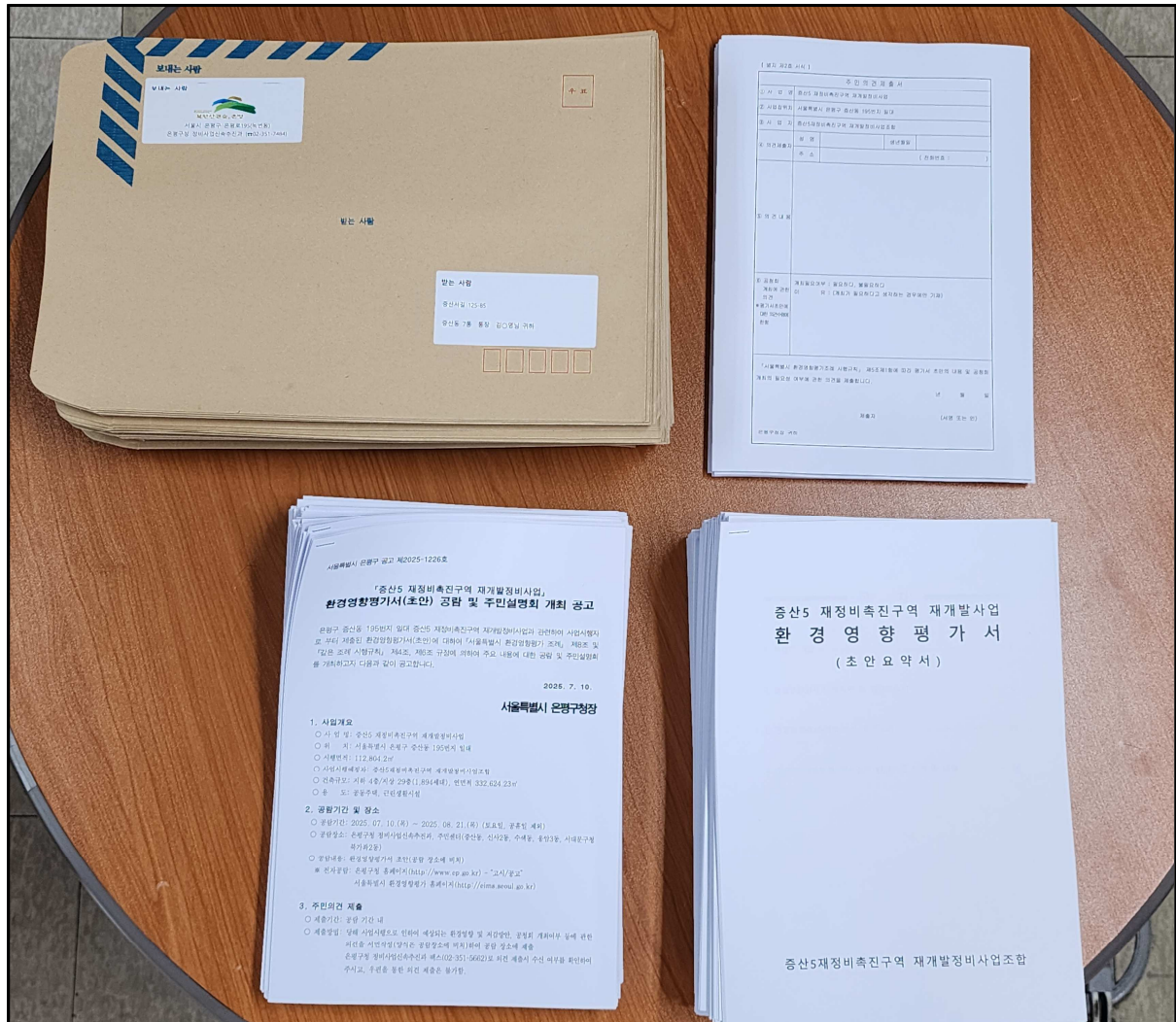
은평구청 홈페이지

(3)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판 게첨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4)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및 주민설명회 안내문 배포(통반장)



서울화양동우체국 101-83-02925 ☎02-465-267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56 (화양동) 고개문의 전화 : 1588-1300 우체국 영업시간: 평일(09-18시), 토요일 휴무 접수번호 : 10369680 접수일자 : 2025-07-10 09:34 접수자 : 창구 103			
<국내일반우편물> 발송인 : ~~~~~~			
종별	중량	통수	통당요금
보통	122g	386	760
합계	386통		293,360원
총요금	:(	(즉납)	293,360원
수납요금	:(		293,360원
신용카드	:(		293,360원
카드번호 : 4033-0202-****-961*			
카드사명 : 현대카드			
매입사명 : 현대카드			
할부개월 : 일시불, 승인금액 : 293,360원			
승인번호 : 00275140			
가맹점번호 : 124113636			
기프트카드잔액 :			
* 손해배상 등의 청구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배달조회 등 사항은 우체국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마감후 접수 우편물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국에서 출발합니다. * SMS서비스와 청구서에 결제가맹점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 표시됩니다			

(5) 주민설명회 전경사진



2.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가. 서울특별시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건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I. 항목별 검토의견			
	종합 의견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6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13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반영】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과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보완하였음	-
		평가항목 중 기상,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인구·주거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대상지 주변의 현황조사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제6장 전단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의 평가내용, 평가기준을 넣은 체크리스트를 넣고 반영 여부를 표기하여 첨부 바람	【반영】 평가서 작성시 6장 전단에 심의기준의 평가내용 및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표기하였음	-
	기상	(항목)『현황조사』 중 기상개황은 최근 10년간의 기상 자료 분석 제시 - 현상일수 산정 기준 제시 바람	【반영】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중 현상일수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음	-
		- AWS 자료분석에 습도를 포함하여 결과 제시 바람	【반영】 AWS 자료분석에 습도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기상	◦ (항목)『미기상 변화예측』 중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기상 변화 예측지점 제시 - 계절별 미기상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비교 분석결과 제시 바람	【반영】 ◦ 계절별 미기상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 (항목)『미기상 변화예측』 중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후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 사업으로 인한 바람길의 변화로 보행자 등 가능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설명 바람	【반영】 ◦ 서대문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 활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바람길 변화 영향을 예측하였음	-
		◦ (항목)『보행환경평가』 중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계절별 분석결과를 활용한 보행환경평가결과 제시 바람	【반영】 ◦ 계절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보행환경평가 결과를 제시하였음	-
		◦ p80, 미기상 측정지점 - 상세한 선정 사유 제시 필요	【반영】 ◦ 미기상 측정지점 선정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였음	-
		◦ p99 - 기상 입력자료중 대표기상인 '서대문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의 풍속 2.8m/s는 강풍 사례로는 다소 풍속이 약한 편이니, 최대풍속 98% 범위에 해당하는 기상자료 또는 5m/s 풍속으로 변경하여 적용 바람	【반영】 ◦ 서대문 AWS 최대풍속 95% 관측자료의 풍속 2.8m/s를 풍속 5m/s로 변경하여 모델링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 기상 입력자료중 풍향에서 사업지구 인근의 3개소 AWS지점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동풍계열 풍향(77~79쪽 참조) 사례에 대해 추가로 예측 수행 바람. 이때 풍향은 45°(북동풍), 풍속은 3m/s를 권장하며 나머지 기상요소는 임의값을 입력할 수 있음	【반영】 ◦ 추가풍향으로 동풍계열(북동풍, 45°), 풍속 3m/s를 적용한 모델링을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기상	◦ p102, 133~135, 바람장 분석 결과 사업 전과 후 풍속이 크게 변하는 지역에 대해 미기상 영향예측 지점을 추가하여 분석 바람. 2개 지점을 추천함. 1)사업 후에는 105동 남쪽 연결녹지이고 사업 전은 연서중학교 운동장 중앙부근, 2)사업 후는 306동 남서쪽 주차출입구 부근이며 사업 전은 건축물이 없는 골목에서 그 골목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점	【반영】 ◦ 사업시행 전·후 풍속이 크게 변화하는 지역에 대한 미기상 영향예측 2지점(1. 연서중 운동장, 사업 시행 후 105동 남쪽 연결녹지. 2. 사업시행 후 306동 남서쪽 주차출입구)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 p117~139, 운영 시 사업지구 동측 경계부(301~303중)에 7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계획으로(814쪽), 미기상 변화 예측 및 보행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방음벽 설치가 고려되었는지 알 수 없음 - 운영 시 설치 예정인 방음벽을 고려한 미기상 변화 예측과 보행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예측 결과 도면에 방음벽 위치 표기·제시	【반영】 ◦ 금회 운영시 방음벽 설치계획(9m)을 반영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미기상 변화 예측 및 보행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 p123, 132, 135, case5, 6 사례의 경우 사업지구 북서쪽에 위치한 미성아파트 단지내 2m 고도의 바람은 사업 전 비교적 강한 동풍계열 바람길이 나타나지만 사업 후에는 바람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의 영향으로 봄이 타당한지 설명 바람. 그리고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를 통과한 뒤에는 사업지구 북서측 미성아파트와 반홍산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임'(132쪽) 이라고 기술하였는데, 미성아파트 경계 부근 사업지구 내에서는 강한 서풍계열의 기류가 예측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설명 가능하면 제시 바람	【반영】 ◦ 미성아파트 경계 부근 사업지구 내 강한 서풍계열의 기류가 예측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기상	◦ p131~132, 바람장 영향 분석 - 주변 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장 영향 분석 시 최소 8방위 풍향에 대한 분석 필요	【반영】 ◦ 주변 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장 영향 분석 시 북풍, 북동풍, 남서풍을 추가 하여 분석하였음	-
		◦ p136~, 보행환경평가 - 보행자 높이에서의 온열 환경 변화, 이동경로 위치별 쾌적도 등 평가	【반영】 ◦ 보행자 높이에서의 온열 환경 변화, 이동경로 위치별 쾌적도 등을 예측하였음	-
		◦ 미기상 변화예측 - 계절별 분석 필요	【반영】 ◦ 미기상 변화예측 시 계절별 분석하였음	-
		◦ (심의자료 p21) 운영시 방음벽(H=10m)을 설치할 계획으로 투명 방음벽 설치 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예 : 도트 스크린) 설치 권고	【반영】 ◦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음	-
		◦ (심의자료 p22~23) 미성아파트 경계 부근 사업지구 내의 사업 후 강한 서풍계열 기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업 전과 후(case 5, 6)의 10m, 20m, 50m 높이의 수평바람장을 제시바람	【반영】 ◦ 미성아파트 경계 부근 사업지구 내의 사업 후 강한 서풍계열 기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10m, 20m, 50m 높이의 수평바람장을 제시 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항목)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공사단계에 따라 대기오염현황,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바람	【반영】 ◦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음	-
		◦ (항목)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가중 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 살수 및 세륜세차가 어려운 동절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제시 바람	【반영】 ◦ 동절기 살수를 이용한 저감대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구(은평구청)와 협력하여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인력에 의한 청소를 실시하여 비산먼지를 관리토록 하겠음	-
		◦ (항목)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배출허용 기준 적용 건설기계 100% 사용 -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최대한 배출등급이 높은(Euro 6, Tier 4)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을 적극 검토 바람 -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등급이 높은 Tier 4, Euro 6 등 친환경건설장비를 5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압쇄기(굴삭기), 덤프트럭 이외 건설장비에 대한 친환경장비 사용계획 제시 바람	【반영】 ◦ 평상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포함)에 친환경 건설기계(Euro 6, Tier 4)를 100% 사용토록 강화하였으며, 전기사용장비(전동 지게차)를 사용토록 하겠음	-
		◦ (항목)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이행 계획 수립 - 동절기 살수를 이용한 저감대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제시 바람. 또한 지역자치단체 및 주변개발사업자와 협력하여 분진흡입차량 운영 바람	【반영】 ◦ 동절기 살수를 이용한 저감대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구(은평구청)와 협력하여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주변개발사업(증산4 재정비촉진구역)과 공기가 중첩될 경우 각 사업의 승인기관과 협의하여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대기질	◦ (항목)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 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 친환경(저녹스)보일러는 설치 시점에서의 1등급 보일러 설치 고려 바람 - 사업지역 운영시 가중농도 최소화를 위한 녹지 및 조경계획 제시 바람 - 사업지구 조경계획시 알레르기성이 낮고 B-VOC 방출이 낮은 식재류를 우선적으로 고려 바람	【반영】 ◦ 보일러는 설치 시점에서의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저녹스 보일러 1등급을 설치토록 하겠음 ◦ 사업지구 내 다양한 수종의 수목식재(B-VOC 방출 수종 최소화, 대기 정화 수종 식재)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금회 식재계획 수립 시 B-VOC 방출 수종을 축소 계획하였음	-
		◦ (항목) 친환경건축자재 사용계획 수립(오염물질방출 건축 자재 사용 금지 방안 제시 등) - 시공 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베이크 아웃, 실내공기질 측정(공동주택, 취약계층 이용시설)계획 제시 바람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입주 전 베이크 아웃 실시 및 실내공기질을 측정 계획을 제시하였음	-
		◦ p160, 176, 238, 영향 예측지점으로 선정한 자선메르시안 아파트(A-3) 인근이 - 토공시 대기질 예측결과가 PM-10이 상대적으로 높고 - 저감대책수립후 토공시 예측결과가 다른 예측지점과 비교 하여 PM-10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으로 고려하여 - 대기자동측정기 설치를 3개 하는 과정에서 자선메르시안 아파트 주민들이 보기 좋은 장소로 설치 하기를 권고함	【반영】 ◦ 자선메르시안아파트 인근으로 대기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전광판은 주민들이 보기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p162~164, 철거 기간 6개월 및 토공기간 14개월(20일/월, 주말 제외)로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나, 작업중단일수를 고려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과소평가되었음 - 철거기간 4개월 및 토공기간 12개월 중 작업중단일수(주말, 공휴일, 명절, 휴가, 우천, 미세먼지경보 등)를 고려한 실제 철거 및 토공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5.01)을 토대로 일토공량 산출 및 실제 공사 투입 장비 대수 반영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확산영향 예측 실시	【반영】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5.01)”을 토대로 비작업일수를 산정하여 공사기간에 반영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
		◦ p174~228, 대기질 영향예측 조사 결과 과정 재검토 필요 - 본 사업지역에서의 토공시 대기질 영향예측결과, PM10(일평균)의 경우 예측 5개지점에서 거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미기상 자료를 이용한 예측결과보다 서울기상대 및 AWS 기상자료 이용시 2배 정도 높은 농도가 산출되고 있음 - 또한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저감방안이 적용되었음에도 예측결과가 환경기준에 가깝게 도출되고 있음 - 예측 모델링에 사용된 미기상자료는 자료간 상관성이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예측결과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특이한 결과임 - 그러나 운영시 예측결과는 사용된 기상자료에 관계없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질소산화물을 포함하여 토공 시 모델링 예측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반영】 ◦ 미기상 자료를 이용한 예측의 경우 3일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영향예측을 실시함에 따라 서울기상대 및 AWS 기상자료 대비 기간이 짧아 가중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미기상 관측자료와 주변 AWS 기상자료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성이 높은 관측자료를 혼합하여 1년에 대한 미기상 자료 생성 후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p175~203, 216~22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현황농도 및 환경기준 대비 증가율(%)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여도 평가 추가	【반영】 ◦ 현황농도 및 환경기준 대비 증가율(%)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여도 평가를 추가하였음	-
		◦ p236~237, 810, 공사 시 대기질 상시모니터링기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사진에서는 방음벽에 부착되어 있음 - 대기질 상시모니터링 기기를 방음벽에 부착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 확산 영향이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음 자동측정기기 설치 위치(810쪽)와 같이 설치하고, 대기질 상시모니터링기의 모터 소리 등이 소음자동측정기 센서에 수음되지 않도록 일정 거리(약 1m) 이격·설치	【반영】 ◦ 대기질 상시모니터링 기기 센서는 비산방진망 상단에 설치하며, 소음자동측정기 센서에 수음되지 않도록 일정 거리(약 1m) 이격하여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
		◦ p246, 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강화 - 조사주기를 분기 1회, 토공시에 월 1회로 제안하고 있으나, 토공시 예측 결과와 철거시 공정특성을 고려할 때 철거 및 토공사 시기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월 1회로 측정 필요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주기를 철거시 월 1회로 제시하였음	-
		◦ p643,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목을 단지내 식재함에 있어서 - 알레르기 유발되는 수종은 가능하면 주민통행이 적은 곳에 식재하기를 권고함 예) 신갈나무	【반영】 ◦ 단지 내 식재계획 수립 시 알레르기 유발 수종은 가급적 주민통행이 적은 곳으로 계획하였음	-
		◦ (심의자료 p36) 대기자동측정기를 비산방진망 상단에 설치할 계획으로 기술하였으나, <센서설치 예시> 사진은 비산방진망 중앙에 설치됨 → 본문에서 설치 예시 사진 제외 필요	【반영】 ◦ 심의자료 내 “센서설치 예시” 사진은 제외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온실 가스	◦ (항목) 사업시행 전·후(저감 전) 연간 온실가스 예측 - 2024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 계수 등을 참고하여 전력 배출계수 현행화하고 배출량 재산정 요망	【반영】 ◦ 사업시행 전·후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2024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9,24p
		◦ (항목)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설계방안) 작성 -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 관련 사항들은 곳곳에 확인되나,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 필요	【반영】 ◦ 본 사업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97~ 99p
		◦ (항목)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 검토 - 계획된 에너지자립률이 20.14%로, 추후 실시설계 후 에너지 자립률이 2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너지자립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필요	【반영】 ◦ 에너지자립률이 2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초(초안) 20.14%에서 금회 20.54%로 상향 계획하였음	77~ 78p
		◦ (항목)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계획 - 전기차 화재예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면밀히 설정할 것을 검토 요망	【반영】 ◦ 전기차 화재발생시 주변으로 2차 확산을 방지하고 대피가 가능하도록 동출입구와 최대한 이격하여 배치하였음	103~ 107p
		◦ p282, 사업전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리 필요 - 서울시에서는 운영단계에서의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진행 중임 따라서 사업 전후에 대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전기, 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정리표를 추가 해주시기 바람	【반영】 ◦ 사업시행 전·후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추가하여 제시하였음	35p
		◦ p302, 주변 건축물까지 고려한 음영 시뮬레이션 보완 필요 - 설치포인트 별 일조시간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고, 주변건물 까지 포함하여 보완하기 바람	【반영】 ◦ 태양광 일조시간 검토시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음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설치포인트 별 일조시간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였음	47~ 73p
		◦ p30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입력값 추가 필요 - ECO2 입력값에 대한 요약본을 추가로 보완해주시 바람	【반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ECO2 프로그램 입력자료를 제시하였음	78~ 82p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건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수질	◦ (항목)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 사업대상지 면적이 상당히 커 일 발생 총 토사유출량이 82톤에 육박함.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보완 필요	【반영】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덮개, 쇠석포장, 야자 매트 등을 추가 설치·계획하였음	-
		- SS 유출수가 인접한 홍재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SS 유출수 하천 유입 모니터링 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적절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반영】 ◦ 사업지구와 인접한 불광천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우기시 주 1회, 우천시 상시 모니터링으로 주기 조정 필요. 광학센서 등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반영】 ◦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계획을 강화하고, 간이시험기 등을 비치하여 상시 측정할 계획임	-
		◦ (항목)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대상지 내 조사지점 추가 확보(축구장 면적당(0.75ha) 1개 지점)하여 지하수 수질현황 보완 필요	【반영】 ◦ 건축물 철거 후 토양오염도 조사 시 지하수질 16개 지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계획임	-
		◦ (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굴착완료시 유출지하수 발생량 상당함. 공사시 유출지하수 최소화 계획과 유출지하수 환원대책 수립 필요.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 재이용 계획 수립하고 빗물재이용 계획과 연계하여 활용가능량, 활용 용도 및 활용량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에 대해 최소화 대책, 재이용 계획, 활용가능량(발생량) 대비 활용량(재이용량)을 제시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내 모니터링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함	-
		- 유출지하수 발생량, 재이용 모니터링 계획 분리하여 사후 환경조사항목에 포함하여 계획 제시 필요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수질	- 유출지하수 발생량 모니터링 계획, 조사지점을 집수정 유출 유량계 지점으로 수정하고, 조사주기는 공사시 1회/일, 운영시 1회/월로 수정 필요	【반영】 ◦ 공사시 조사지점은 침사지 유입부 및 유출부, 조사 주기는 1회/일, 운영시 조사지점은 유량계 지점, 조사주기는 1회/월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
		- 유출지하수 재이용 모니터링 계획, 조사지점을 집수정 유출 유량계 지점으로 수정하고, 재이용 모니터링 주기는 월별 재이용계획과의 비교를 위해 월 1회로 설정 필요		
		- p.399, 공사시 지하수위, 유출지하수량 모니터링 주기 1회/일로 조정 필요	【반영】 ◦ 지하수위 및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주기를 1회/일로 조정하였음	-
		- 지하수 모델링 검증 수행주기를 공사시기별(굴착초기, 중기, 완료, 운영시)로 총 4회로 조정 필요. 해당시기별 모델링과 실측값(지하수위 강하량, 유출지하수 발생량) 차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관리대책(발생저감 및 최소화 대책, 재이용 계획 등) 보완 명시 필요	【반영】 ◦ 지하수 모델링 검증 수행주기를 시기별(굴착초기, 굴착중기, 굴착완료, 운영시)로 재수립하고, 지하수 모델링 결과보다 실측결과가 높게 예측된 경우, 현장대응방안을 이행토록 할 계획임	-
		◦ (항목) 공사 시 기존건축물 철거 대책(정화조, 지하매설물 등) - 정화조 등 매설된 기존 지하시설물을 별도 도시하여 제시 필요. 사업지구 내 개별 정화조 및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 정화조 철거 계획 면밀하게 수립하여 제시 필요	【반영】 ◦ 현황 측량 및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지하매설 물도를 제시하였으며, 철거 시 대상 정화조를 조사 후 관할 구청(은평구)에 폐쇄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수질	◦ (항목)「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분야 업무편람」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 반영 필요	【반영】 ◦ 관련규정 검토 결과, 사업지구는 현재 합류식 계획 지역에 해당하나, 금회 사업시행(재개발)로 인해 분류식으로 계획됨	-
		◦ (항목) 우수유출량 산정 및 저감계획 수립 - 사업후 30년 빈도 유출량에서 10년빈도 유출량을 초과하는 초과유량((30년빈도 유출량 -10년빈도 유출량)*420초(평균 유입시간 7분적용)으로 산정)에 대한 빗물관리 시설 추가 확보 필요(해당 평가기준은 우수유출율 유지가 아닌 침수 위험도 확보 관련 사항임)	【반영】 ◦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필요대책량은 기존 필요 대책량 294.5m³/hr 내 우수유출 증가량 268.4m³을 반영하여 총 562.9m³/hr로 산정되었으며, 설치대책량은 400.8m³/hr로 필요대책량 562.9m³/hr를 만족하지 못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침투시설 설치 및 투수포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산정하였음	-
		◦ (항목)「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양향개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따른 빗물관리계획 수립 -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제시하고, 설치대책량 확보량 명시하여 빗물분담량 만족여부 명확히 제시 필요		-
		◦ (항목)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사업시행 전·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등 산정하고 최소화 계획 수립(생활계, 토지계 등의 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 반영 필요	【반영】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별도 인허가 진행 예정임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수질	◦ (항목) 상수사용량의 상수도관망 해석에 따른 공급가능성 및 주변지역 상수사용에 대한 영향 검토 - 반영 필요	【반영】 ◦ 사업지구 기반상수관로부터 신설 상수관로 (1단지 : D150, 2,3단지 : D100)를 연결하여 사업 지구 내 단지별 저수조로 공급할 계획이며, 「서울 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하여 용수공급능력을 검토 결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 (항목) 용수절감계획 수립(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절수효과 산정 시기 설치 일반제품의 최대토수 유량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기본이며, 추가로 절수 가능 제품의 설치 계획 수립 필요) - 반영 필요	【반영】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절수형 설비를 추가계획(욕조, 주방수전, 세탁기)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최대토수유량을 반영하였음	-
		◦ (항목) 침수피해가능성 평가 및 침수안전도 확보 대책 수립 - 서울안전누리에서 사업대상지 서측, 남측 지역이 침수예상지로 나타남. 해당지역의 침수피해 가능성 평가하고 침수안전도 확보 대책 수립 필요	【반영】 ◦ 사업지구 내 침수흔적 조사결과, 2011년, 2018년 일부 구간에서 0.5m이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빗물 침투시설,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할 계획임	-
		- 서울시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선언에 따라 노면수 유입가능 지점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하여 제시 필요. 물막이판 설치 지점 선정, 해당지점 지반고 및 주변지반고 비교, 물막이판 형식(자동식,수동식 등), 물막이판 높이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반영】 ◦ 사업지구 내 수동식 물막이판 4개소(1단지 2개소, 2,3단지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지반고 및 주변지반고, 물막이판 상세도(안)을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수질	◦ p391, 계획오수관거 및 계획우수관거 - “계획오수관거와 계획우수관거 통수능을 검토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예측됨”으로 기술하였는 바, - 어떤 조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계획오수관거와 계획 우수관거 통수능 검토 조건에 대해 보완 및 설명하기 바람	【반영】 ◦ 계획우수관거 : 우수수리계산서 상 단지 내 관로별 배수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유출량을 누적하여 검토 → 만족 ◦ 계획오수관거 : 우수수리계산서 상 산정된 단지별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은 계획 오수관의 만관유량에 비해 여유가 있어 배수가 양호한 것으로 검토	-
		◦ 사업대상지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상당함.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량 최소화 및 지하수 환원계획 보완이 필요함. 또한, 기존 매설된 정화조 규모가 상담함에 따라 철거대책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반영】 ◦ 현황 측량 및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지하매설 물도를 제시하였으며, 철거 시 대상 정화조를 조사 후 관할 구청(은평구)에 폐쇄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음	-
		◦ (심의자료 p71) 운영 시 유출지하수는 저류조에 어떻게, 어디로 유입되는지, 전처리 장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반기 1회 모니터링 시 시료 채취 또는 측정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계통도에 표기 또는 지면에 설명하면 좋겠음 (그림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표기가 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반영】 ◦ 빗물이용시설 계통도 상 유출지하수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를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토지 이용	◦ (항목) 바람길을 고려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시설이 표시된 계획도에서 설명 필요	【반영】 ◦ 선큰, 천창 설치 위치의 저층부 환기계획을 제시하였음	-
		◦ (항목) 보도는 그린웨이(녹도)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내 순환되도록 배치 - 간선도로변, 단지 간 보행동선, 공공시설부지와와의 관계, 차량진출입동선과 관계 설명 필요	【반영】 ◦ 보도는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내 순환토록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 간선도로변, 공공시설(지하철역, 학교 등), 차량진출입 동선과 연계하여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 (항목) 사업지구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시설 계획 수립 (위치, 규모 등) - 간선도로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고려 필요	【반영】 ◦ 주변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였음	-
		◦ (항목) 공개공지 위치 타당성 및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 공개공지 계획 없으나 일부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반영】 ◦ 사업 지구는 공개공지 조성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구 내 공원 및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음	-
		◦ (항목) 단지(공동주택 부지)와 인접하여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소음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완충 녹지 등의 공간 확보 - 주간선변 방음벽 설치계획으로 완충녹지 계획 없음	【반영】 ◦ 사업지구(3단지)와 인접한 도로(증산로) 부근 방음벽 설치 불가피하나, 연속적인 녹지를 계획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토지 이용	◦ 사업의 개요 p28~29,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금회 재협의(변경) 건으로, '사업의 개요'에서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리계획(용적률, 건폐율 등) 및 건축물(층수, 배치계획, 세대수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전·후를 비교한 전반적인 변경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반영】 ◦ 관리계획(용적률, 건폐율 등) 및 건축물(층수, 배치 계획, 세대수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비교표로 제시하고, 배치도면을 제시하였음	-
		◦ p460, 101~104동을 축으로 하는 중·횡단면도를 제시하고, 현지반고를 고려한 지형 순응형 건축 배치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반영】 ◦ 101~104동을 축으로 하는 중·횡단면도 및 지형 순응형 배치계획을 제시하였음	-
		◦ p475, 그린웨이 조성계획 - 계획지구 내의 그린웨이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접한 증산4구역에 계획된 녹도(보행동선) 및 불광천의 산책로와의 연계성을 함께 검토·제시할 필요가 있음	【반영】 ◦ 사업지구 내 그린웨이(녹도)는 증산4 구역 공공 보행통로 및 불광천 산책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그린웨이 등 관련 도면을 제시하였음	-
		◦ p476, 바람길 계획 도면 제시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배치와 바람길의 위치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시하여 설명하기 바람	【반영】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 도면에 바람길 위치를 표기하여 제시하였음	-
		◦ p477,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계획 - 2, 3단지는 지하층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해 천창과 선큰을 계획하였으나, 1단지는 관련 시설의 계획이 없으므로, 1단지의 지하층 자연채광 및 환기 계획의 개념(단차를 활용한 계획 등)을 제시하기 바람	【반영】 ◦ 1단지 지하층의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을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토지 이용	◦ p477~481, 보행 동선계획 및 보행약자 시설계획 - 단지 내 동선계획은 단지별로 자세히 제시하기 바람	【반영】 ◦ 단지별 동선계획을 제시하였음	-
		- 단차로 인해 대상지 내·외 보행동선에 경사로가 계획된 경우, 경사가 발생하는 구간은 전 구간 경사도를 제시하고(단차를 모두 수직동선으로 계획한 것인지 확인 요) - 경사도와 상관없이 긴 구간에 경사가 계속되는 보행동선은 보행약자를 배려해 중간에 평지구간을 계획하기 바람	【반영】 ◦ 보행동선 중 경사로 구간의 경우 경사도(1/12)를 제시하였으며, 단지 내 약 50cm 연속되는 경사 구간은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평지구간은 계획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보행약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등)을 계획하였음	-
		- 차량동선은 주차장 입·출구부만 제시하고 있으나, 지상부 긴급차량의 동선 및 소방차구역을 함께 제시하기 바람	【반영】 ◦ 비상차량동선 및 소방차 주차구역을 도면으로 제시하였음	-
		◦ p478, 지구바깥 보행동선과 연계방안 제시 - 지역단절 최소화 측면에서,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 내 보행 동선이 지구 바깥의 지하철역, 학교, 공원 등 주요 입주민 이용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제시 바람	【반영】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동선과 외부 지하철역, 학교, 공원 등 편의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 p478, 지구바깥의 차량동선과 연계한 보완설명 - 지구내외의 차량동선에서 지구내 진출입구와 연계하는 동선을 표시하고, 보행동선과 교차지점(특히 지구내 차량 진출입 지점)에서 보행자의 안전대책 제시바람	【반영】 ◦ 사업지구 외부에서 단지 내 차량진입 동선을 제시 하고, 보행동선과 교차하는 지점은 횡단보도,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음	-
		- 비상차량 동선을 별도로 제시 바람	【반영】 ◦ 비상차량동선 및 소방차 주차구역을 도면으로 제시하였음	-
		◦ p480,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로의 경사로 계획 제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의 기울기에 대한 계획 제시 바람	【반영】 ◦ 보행동선 기울기(1/12)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토지 이용	◦ p482~483, 자전거도로 계획 - 대상지 내·외의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도면으로 연계성을 검토하고, 대상지 외부의 단절된 구간에 대해 연결 대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반영】 ◦ 사업지구 내·외 자전거도로를 하나의 도면으로 제시하고, 사업지구 내 자전거 도로와 불광천 인근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신설 계획을 제시하였음	-
		-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동선이 보행 동선과 동일한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동선 분리방안(바닥패턴 구분 등) 또는 단지 내 운행금지 방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영】 ◦ 단지 내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은 바닥분리패턴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음	-
		◦ p483, 학교 부지 위치도 삽입 - 연서중학교의 위치변경 전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삽입 바람	【반영】 ◦ 사업시행 전·후 연서중학교 위치를 제시하였음	-
		◦ p485~487, 생태면적률 - 대상지 내 세 개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생태면적률을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생태면적률을 별도로 제시하기 바람	【반영】 ◦ 단지별 생태면적률을 각각 제시하였음	-
		◦ p491, 광역녹지축 연계방안 보완 - 수색증산재정비 촉진지구 전체 공원·녹지계획의 계획방향 및 개념(464쪽 <그림 5.3.1-13>를 참조)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광역녹지축 연계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도면을 보완하기 바람	【반영】 ◦ 상위계획 및 주변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광역 녹지축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도면을 첨부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토지이용	◦ p491, 비오톱 1등급 지역 보전방안 - 연서중학교 사면부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대체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제시한바, 위치 및 조성(조경식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반영】 ◦ 비오톱 1등급 지역 등 대체녹지 및 연결녹지의 조경 식재계획을 제시하였음	-
		◦ p494, 지하공간 개발 적정성 - 지하개발 관련 사항을 각 단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기 바람	【반영】 ◦ 지하개발 계획은 단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 주차장계획의 총괄 조서를 작성·제시 바람(단지를 구분하여 각 층별 일반, 전기차충전기, 장애인전용 등 구분한 주차 대수)	【반영】 ◦ 단지별 및 층별 주차계획을 제시하였음	-
		◦ (심의자료 p96, 자전거 도로) 대상지 중앙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계획된 자전거도로에서 불광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남-북 방향의 자전거 도로 추가 검토 바람	【반영】 ◦ 사업지구 내 자전거 도로와 불광천 인근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신설 계획을 제시하였음	-
		◦ (심의자료 p105, 보행동선) 단지 내 보행자 동선 경사로가 1/12로 계획 되어, 보행약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사로가 50cm 이상 연속되는 구간은 중간지점에 평지구간을 계획 하고, 반영된 구간의 종단면도 제시 바람	【반영】 ◦ 보행동선 중 경사로 구간의 경우 경사도(1/12)를 제시하였으며, 보행약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사로가 연속되는 구간 중간지점에 평지구간을 계획함	-
		◦ (심의자료 p116, 대체녹지) 비오톱 1등급지 훼손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녹지를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에 조성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유지가 아닌 공공성을 갖는 녹지에 조성하는 방안 검토 바람	【반영】 ◦ 비오톱 1등급 지역이 공공성을 갖도록 공공기반 시설 중 녹지구간에 조성토록 계획하였음	-
		◦ (하천변 경관) 불광천에 접한 3단지 전면의 공동주택 건축 물이 지구내 최고층수(29층)으로 계획되어 위압적인 경관이 형성되므로, 301·302동의 층수 하향조정 검토 권고	【반영】 ◦ 불광천과 접한 301·302동의 최고층수는 기존 29층에서 27~28층(세대층 기준)으로 하향조정 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토양	◦ (항목) 토양오염 현황조사 -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과거 토양오염 현황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새롭게 5개 지점을 조사한 것은 바람직함 - 조사지점의 명칭이 과거의 것과 구분이 되지 않아 최근 조사지점은 새로운 명칭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과거 3차례 토양오염 현황조사 결과와 이번 토양오염 현황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초과 양상이 다름. 과거 3차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는 주로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초과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개소에서 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오염도가 상당히 좁은 범위에 걸쳐 여러 곳에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그 원인에 대해 간략히 추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반영】 ◦ 과거 조사와의 구분을 위해 금회 현황조사 지점 명칭을 S-8~12로 변경하였음 ◦ 본 사업지구의 과거 이력 조사, 매립 폐기물 존재 여부, 외부 영향으로 인한 오염 영향, 정화조 및 지장물 조사 등을 고려하여 오염 원인을 추정하여 제시하였음	-
		◦ p496~, 토양오염도 평가 및 정화계획 보완 필요 - 토양오염도 평가 현지조사 시료채취 시 토양 시료 채취 위치가 사업지역 외각에 편향되는 등 위치 선정의 근거 보완 필요(면적 대비 시료 채취 수량 및 위치 선정, 채취 심도 등에 대한 근거 보강, 필요 시 시추주상도 등 활용, 주유소 등 토양오염원/시설 인접 지역 등) 토양오염도 추가 조사 계획 수립 시에도 위치 선정 근거가 동일하게 필요함	【반영】 ◦ 본 사업지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 및 지하 매설물 위치를 고려하여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과거 조사 지점과 이격된 지점을 선정하였음 ◦ 토양오염도 추가 조사 계획 수립 시 오염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지점을 재선정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토양	- 본 보고서에서는 현지조사 5 지점의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초과 지점 및 항목 : S-4(심토) 납”을 보고하였음. 또한 문헌조사(기 협의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서)의 경우(p.501~) “S-3, 4, 7번 지역에서 아연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에는 만족하지만 고농도로 조사되어 3차 조사 시 본 지역 주변 인근으로 각 2개 지점 (총 6개지점)을 추가 sampling하여 토양오염도 분석을 실시 함”을 보고하였으나, S-2의 비소 항목과 S-3의 납 항목, S-3의 TPH 항목이 각각 우려기준의 70%와 40%를 초과함 (이는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음). 더불어 현지조사 결과에서 TPH 항목이 우려기준 이하이지만 모든 시료에서 100 ppm 전 후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본 사업 지역 토양은 유류 및 중금속류 오염이 우려되는 토양으로 판단할 수 있음(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르면”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오염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한다.”) - 상기 오염도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지구 건축물 철거 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실시토록 할 계획임”으로 기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추가 토양오염도 분석 계획 수립 내용(도면 포함)을 제시하지 않음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건축물 철거 후 하부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며, 추가 조사 지점은 오염 발견 지역을 중심 으로 조사 지점을 재선정하여 추가 토양오염도 분석 계획 수립 내용(도면 포함)을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토양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장물 철거 시 추가 토양오염도 조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권고함. "공사 중 토양오염 발견시 처리대책"이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부분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지역 면적 대비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위치, 개소수 산정 및 타당성 검토, 각 지점의 심도별 시료 채취 계획 등). 이와 더불어 중금속 등 토양정화 사례 등을 사전에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영】 ◦ 철거 후 오염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 내용(도면 포함)을 제시하였음 ◦ 중금속 토양정화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의 기준치를 납 항목이 일부 지점의 심토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철거 후 오염지점을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의 추가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오염기준 초과시 지자체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 추가 토양오염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입하였으면 함	【반영】 ◦ 건축물 철거 후 오염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초과 시 지자체에 보고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
		◦ (심의) 본 사업부지는 과거이력 및 현 토양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오염(아연, 납, TPH 등)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데, 철거 후 계획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반영】 ◦ 철거 후 토양오염 조사 계획에 따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지형 지질	◦ (항목)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주변 산지에서의 물길 처리 방안 제시	【반영】 ◦ 공사시 초기우수 및 토사처리, 비점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공사 시 경계부에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를 계획하였음 ◦ 운영 시 산지 부근(북서측)에서 사업지구로 우수 흐름이 예상되며, 인근 산지 사면부에 집수로 및 차수턱을 설치하여 우수유출수를 집수 후, 사업 지구 내부에는 우수측구를 설치하여 인근 우수관 또는 배수로에 연결 후 주변 공공하수관거로 배제 할 계획임	-
		◦ (심의자료 p130) 유입수와 배출수에 대하여 규모 재검토		
		◦ (항목) 토사처리계획 제시 - 우기시 불광천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 마련		
		◦ (항목) 사업 전·후 주변지역을 포함한 중·형단면도 작성 - 주변 지하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	【반영】 ◦ 주변 지하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한 매설물도 및 단면도를 제시함	-
		◦ (항목)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 - 옹벽발생 구간에 대한 검토 및 사면 안정성 검토	【반영】 ◦ 사업지구 내 계획된 보강토옹벽 및 자립식옹벽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를 제시함	-
		◦ (항목)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활용량 모니터링 - 지하수위 측정은 1회/1일 이상 측정	【반영】 ◦ 굴착으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하수위 측정 횟수를 1회/일로 강화하였으며, 측정 결과가 불안정할 경우 준공시까지 1회/일 이상 측정하겠음	-
		◦ (항목)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지하수위 측정은 지하수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지형 지질	◦ p534, <5.3.3-2> 각 시추 단면별 지층분포 상태와 <5.3.3-4> 현장 투수시험 결과를 비교할 때 심도에 대한 부분과 지층 구분이 불일치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요망	【반영】 ◦ 금회 시추 단면별 지층분포 상태와 현장 투수시험 결과 비교 결과 지층 구분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 p534, < 5.3.3-5 > 각 시추공별 암반수압시험결과와 시추 심도와 자료 일관성에 대한 검토 요망. 예를 들면 BH-22의 연암까지 굴착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음		
		◦ p535 - 3개의 시추공 시험에서 변형계수와 탄성계수 구하는 실험시 BH-22의 경우, 압력-변형 곡선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반영】 ◦ 암반의 상태가 약한 연암으로 별도 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
		- BH-22의 경우, 변형계수와 탄성계수 값을 볼 때, 다른 시추공과 비교시 차이가 나며,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결과값은 다른 시추공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가 설명 및 의견 제시 요망	【반영】 ◦ 금회 BH-17, BH-27에 대한 추가 전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은 균등하게 나타남	-
		◦ p553, 각 시추 단면별 지층분포 상태 도표에서 BH-22의 보통암 1.0m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함. 오타인지?	【반영】 ◦ BH-22 시추주상도 재검토 결과, 보통암의 단면은 1.0m로 검토되었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지형 지질	◦ p539 - 설계지반강도 정수의 값을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사용하였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고 실내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 필요	【반영】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흙막이 벽체 설계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반강도 정수를 산정하였음	-
		◦ (심의자료 p147) 암반에 대한 C, ϕ값 근거 제시	【반영】 ◦ 암반의 전단강도정수(점착력 C, 내부마찰각 ϕ)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 조사·평가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22)」과 「암반 공학편람, (한국지반공학회, 2018)」에서 제시하는 기준값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
		- 지하수 변이 추세는 지반안정 및 지반침하 현상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지하수 관측에 대하여 일별 24시간, 48시간, 72시간대 현장사진 첨부 요망	【반영】 ◦ 공사 착공일로부터 지하골조완공 후 1개월까지 지하수위측정을 1회/일 현장관리토록 하겠음(관측 사진은 착공 시 지하수위계 설치 후 24hr, 48hr, 72hr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하겠음)	-
		◦ (심의자료 p135) 비탈면과 보강토 옹벽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	【반영】 ◦ 보강토옹벽 안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음	-
		◦ (심의자료 p140~141) BH-22 풍화암 투수계수 재검토	【반영】 ◦ BH-22 풍화암층 투수계수(1.76×10^{-4} cm/s)에 대한 재검토 결과, 동일 공의 순간충격시험에서 산정된 투수계수는 $1.12 \times 10^{-4} \sim 1.88 \times 10^{-4}$cm/s 범위로 확인 되어 유사한 값을 보임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동·식 물상	◦ (항목) 사업시행으로 식재된 식물종으로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동물종 예측(변화예측결과 표로 작성) - p.634~635, 사업 시행 전·후 동식물상 변화 구체적으로 정리 제시	【반영】 ◦ 사업시행 후 식재수종에 따른 유입동물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 (항목) 사업지구 및 주변에 비오톱유형 1, 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 p.649, 669, 사업지구 서측 비오톱 1등급지는 원형보전할 계획이므로 인접 녹지 조성 등 사업시행 시 해당 비오톱에 미치는 영향 확인(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	【반영】 ◦ 사업지구 서측 비오톱 1등급 지역과 인접한 공공 기반시설(녹지)에 다층식재를 통한 풍성한 녹음제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녹지계획을 수립하였음	-
		◦ (항목) 사업지구 주변 식재현황, 공원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식재계획 수립 - p.643, 조경수목 식재계획도에 이식수목 식재계획 포함	【반영】 ◦ 소나무, 향나무, 주목,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 이식수목 30주를 반영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동·식 물상	◦ (항목) 생물서식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다층구조 식재 - p.650, 대체녹지 조성 시 인접 녹지와 연계성 확보 검토	【반영】 ◦ 대체녹지 식재계획 수립시 인접한 연결녹지(공공 기반시설)와 수종연계(측백나무, 산딸나무, 복자기, 신갈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청단풍, 사철나무, 회양목 등)를 통한 연결성을 확보하였으며, 1단지 내 육생비오톱과 대체녹지를 구분하여 도면에 제시하였음	-
		◦ (항목)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 등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검토 (도면, 목록 등) - p.653, 1단지 내 육생비오톱과 대체녹지 구분하여 도면에 명확히 제시		
		◦ (심의자료 p152~155)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장기적인 가치 보전을 위해 외부의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재고 바람	【반영】 ◦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장기적인 가치 보전을 위하여 외부의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 하기위해 육생 비오톱 1단지, 대체녹지 및 연결녹지 바깥쪽으로 사철나무 생울타리를 조성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적 자원 순환	◦ (항목) 공사 시 건설폐기물 처리 - p683, 수목 292주 중 22주만 이식하고 나머지 전량을 훼손하는 계획을 재고하여 이식, 나무 기증 등 최대한 훼손을 줄여 폐기물 원천감량하는 방안 마련 바람	【반영】 ◦ 훼손수목은 최대한 이식할 수 있도록 당초(초안) 대비 8주를 추가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서울시(조경과)와 '나무나눔 사업'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최대한 감소토록 계획하였음	-
		◦ (항목) 공사 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 p679, 건설폐기물 가중도는 최근 연도 발생량 대비 총 발생량으로 재산정 필요	【반영】 ◦ 건설폐기물 가중도는 최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
		- p688, 분별해체 관련 결과는 사후영향조사로 관리 필요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내 분별해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음	-
		◦ (항목) 기존 건축물 철거시 정화조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 반영 필요	【반영】 ◦ 기존 건축물, 지장물 등 철거시 정화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 (항목) 공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더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반영】 ◦ 사업지구 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RFID를 설치할 계획이며, 리프트 반출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음식물류 자동이송 시스템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 (항목) 운영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p711, 자동이송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접근, 약취 관리 등을 추가 작성하고, 아파트내 배출-보관 장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아파트내 자동이송 RFID 장치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종량 관리, 약취관리 방안도 추가, 사후영향조사로 관리 바람	【반영】 ◦ 사업지구 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RFID를 설치할 계획이며, 리프트 반출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음식물류 자동이송 시스템 설치 및 처리계획, 약취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관련 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내 추가하여 관리할 계획임	-
		◦ p698, <그림 5.5.1-10>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 지점도 - 불광천변 증산2교부터 와산교와 인접한 지역은 북서풍 등의 영향으로 석면비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681P 석면 지도 현황에 우측지역에 분포한 건축물에 석면 건축자재 분포가 높음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지점 추가가 필요함. 특히 서울탁주 공장 등 음식물 제조 시설 등이 있는 곳과 현재 어린이 공원 등이 모니터링 지점이 될 수 있음 - 연서중학교 좌측에 있는 삼성빌라 및 그 일대에 석면 건축 자재 분포가 있는 만큼 2차로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반영】 ◦ 석면검출 건축물의 위치 및 석면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 등을 반영하여 3개 지점을 추가(총 7지점) 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임	-
		◦ p715, <그림 5.5.1-47>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중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내용에 의무 사용비율(50%)를 명시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의무사용량 (35,459톤)을 명시하면 향후 현장공사 계획 및 시공 시 명확한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반영】 ◦ 보고서 내 제시한 의무사용량은 원단위를 적용한 단순 예측값으로 추후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임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항목) 공사 및 운영 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사업지구 주변 모든 정온시설(지하철6호선, 상신중, 연서중 등 포함)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소음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지하철6호선, 상신중학교)을 포함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층수, 높이, 이격거리, 현황사진, 도면 및 TM좌표 등으로 제시하였음	-
		◦ (항목) 현황조사 지점에 대한 소음·진동 측정 - 사업지구 인근에 공사 또는 공사예정인 사업장(증산4 재정비 촉진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에 대한 누적영향실시를 위한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주변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누적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질측정지점 등의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음	-
		◦ (항목)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모든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각 공정별 예측 소음도에 대한 소음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층별 소음 영향 예측 및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 (항목) 수음점과 음원의 거리, 표고 등을 고려하여 소음예측 실시 - 공사시 사업지구와 정온시설 수음점의 표고차를 고려하여 소음예측을 실시하고 가설방음판넬의 제원을 산출하여야 함	【반영】 ◦ 영향예측지점 정온시설의 각 층별 수음점 및 음원 높이를 제시하였고, 수음점의 표고차를 고려하여 소음예측을 실시하였음	-
		◦ (항목)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진동의 조사 및 평가 - 운영시 사업지구 동측 지하철 6호선으로부터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산출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운영시 증산역 지하철(6호선) 운행에 대한 구조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실시하였고, 지하철 구조 소음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건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항목)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 운영시 증산로 및 와산길로부터의 도로소음으로 인한 사업 지구의 층별 예측소음도 산출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반영】 ◦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도로에 의한 층별 예측 소음도를 제시 및 도로교통소음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 (항목) 발파 시 사업지구 경계선 상에서 발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지점에서의 진동속도 측정 및 측정자료 제출 - 발파시에는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함	【반영】 ◦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 (항목) 발파 공법별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발파시에는 사업지구 부근 정온시설에 대하여 0.2kine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발파진동도를 저감하여야 함	【반영】 ◦ 발파시 진동 관리기준 0.2Kine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설정하였음	-
		◦ (항목) 발파공사 기간 동안 발파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에 위치한 주요 정온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음 진동 측정 - 발파전 주변 정온시설에 계측기(게이지 등)를 설치하고, 발파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계획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주변 발파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정온 시설에 대한 계측기기 설치 및 발파시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 (항목)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 개발사업의 공사시기(착공 및 준공 시기)를 확인하여 보고서에 명시하고, 누적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 개발사업의 공사시기를 보고서에 명시하였고,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영향 예측시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 (항목) 공사 시 소음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 거푸집 해제중에 발생하는 탈형소음(낙하충격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롭다운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공사중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 거푸집 설치·해제 등 탈형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드롭다운 시스템 공법 적용토록 계획하였음	-
		◦ (항목) 가설방음판넬 제원 산정시 음원(장비 사용 높이 고려)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 지형조건이나 건물 배치상태, 방음벽의 차음성능(음향투과손실 15dB(A) 이하로 적용)을 고려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정온시설의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여야 함[가설방음판넬설치시 풍하중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으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12개소를 선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였고,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풍하중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음	-
		◦ (항목) 가설방음판넬과 소음원과의 거리를 가능한 10m 이상으로 하여 정온시설의 각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기준 초과시 저감방안 수립 - 사업지구 북측 및 DMC월드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10m 이상) 설치하고, 공사시 예측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층별, 지점별, 공정별 추가 저감방안(에어돔 등)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북측 씨니요양원, 상업 및 주거 시설-3 인근에 가설방음판넬높이 H=10.0m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목표기준을 초과한 예측지점은 추가저감방안(이동식 방음벽 및 에어돔)을 적용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항목)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 검토 - 고층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흡방음 커튼, 갱폼 부착 소음방지 판넬, 거꾸집(알폼) 해체과정의 발생소음(공명음, 공구류 소음 등) 저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공법(갱폼 시스템(소음방지판넬), 흡방음 4중커튼, 소음저감용 매트, 판도라공법, 드롭다운공법 등 저감공법의 설치위치 및 방법, 적용효과, 설치개념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 드롭다운시스템(Drop Down System) 등을 적용하여 탈형소음을 최소화 계획하였음	-
		◦ (항목) 저감방안 수립 후에도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사업지구 가설방음판넬 상단부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가설방음판넬 상단부에 소음자동측정기(4개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 (항목)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저감효과 예측 분석(구체적 근거 제시) - 사업지구 부근(증산로 및 와산길)을 도보로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도보통행안전 분석후에 타워크레인 공사반경(예측)에서 도보통행하는 주민,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주변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철제지붕형 도보통행안전 구조물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함께 도면에 명시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부근 도보통행안전 분석 후 공사시 도보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경계부에 철제지붕형 도보통행 안전통로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항목) 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 공사시 가설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벽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 설치하고, 전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온시설 방향의 소음도를 나타 내도록 하여야 함 -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도는 1일 기준으로 공사시점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상시 소음도를 측정 및 기록 유지(data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가설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가설 방음벽 상단 1m)및 전광판(외부 및 내부 소음도) 설치·계획 하였음 ◦ 소음자동측정기 소음도 결과값(Data)의 경우, 철거 시부터 공사완료 시(가설방음판넬 해체 시)까지 소음 모니터링 결과값을 기록·유지·보관토록 하겠음	-
		◦ (항목) 도로변 공동주택에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토지 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저감대책 우선 검토 제시 - 운영시 지하철 6호선으로부터 301동, 302동, 303동에 대한 소음진동(지하시설의 진동 포함) 저감대책 및 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 제시하였음	-
		◦ (항목) 실내소음 목표치 설정 및 차음설계 실시 - 환기, 펌프, 송풍기, 덕트, 배관 등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운영시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을 적용토록 계획하였음	-
		◦ (항목)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전달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 계획 및 급배수 소음 대책 수립 - 층간소음(바닥충격음) 목표기준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1~3등급으로 설정하고, 준공전 10% 이상을 대 상으로 층간소음을 실측하거나 전수조사하여야 함	【반영】 ◦ 준공 전 층간소음에 대하여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으로 목표기준을 설정하였고, 준공 전 단지 유형별 세대수의 2% 실측계획 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만족시까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보완후 실측(전수조사)하여야 함	【반영】 ◦ 준공 전 층간소음에 대하여 실측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측정토록 계획하였음	-
		-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층상배관공법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본 사업지구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저감대책으로 저소음 배관을 적용토록 계획하였음	-
		◦ (항목)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 실외기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실외기 소음 및 저주파음이 발생하는 경우, 저감계획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저주파음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참조)	【반영】 ◦ 본 사업지구의 경우, 개별 실외기실을 계획함에 따라 저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 p740, 770, 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계산 관련 영향인자 제시 - 공사 시, 운영 시 예측 시 적용한 계산 관련 영향인자(반사차수 등) 제시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프로그램 내 적용한 계산 관련 영향인자를 제시하였음	-
		◦ p741~748, 각 정온시설의 수음점과 최단거리에 소음원 배치를 고려하여 평가 - 각 정온시설의 수음점과 최단거리에 소음원이 위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소음 영향 평가 - 특히, 2~6번(미성아파트, 씨니요양원, 상업 및 주거시설-1,2) 정온시설 이격거리가 6.1~25.2m로 가까움에도 모든 공중 시 예측소음도가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소음원 배치와 수음점 설정 위치 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또한, 전체적으로 예측소음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입력 시 7.5m 또는 15m에서의 음압레벨을 음향파워레벨로 입력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함	【반영】 ◦ 각 정온시설의 수음점과 최단거리에 소음원이 위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공사시 영향예측시 장비의 음향파워레벨 및 모델링 입력조건을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공사 시 저감방안 설치 후 예측 소음도를 전 정온시설에 대해 제시할 것	【반영】 ◦ 공사시 저감방안 설치 후 공종별 예측 소음도를 제시하고 추가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
		◦ p777, 교통량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교통예측자료의 장래 목표연도 주·야간 첨두시 교통량 사용 - 교통량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자료의 장래목표 연도(2030년) 주·야간 첨두시를 사용하여 예측 - 사업시행자가 적용한 '환경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2005년' 보고서는 20년 전의 과거 자료이고 보고서 내에도 나와 있듯이 일부지역의 측정 결과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적용 배제	【반영】 ◦ 사업지구 인근 교통량은 "2024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2025,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에 제시된 주·야간 교통량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음	-
		◦ p796~800, 추가저감대책 적용 전 가설방음판넬 높이 최대한 상향 조정 - 이동식 방음벽, 기타 음원 대책은 위치, 적용 방법 등에 따른 저감량의 불확실도가 큼 - 따라서, 가설방음판넬을 최대한 상향시켜 최대 고정 저감량을 확보할 필요 있음	【반영】 ◦ 사업지구 인근 가설방음판넬을 H=10.0~12.0m 상향토록 계획하여 최대 고정 저감량을 확보하였음	-
		◦ p799, 가설방음판넬 일부구간 내부 흡음형 적용 - 10~11번 정온시설 인접 공사구역이 좁아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가설방음판넬의 반사 영향으로 인접 정온시설 고층부에 소음 가중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설방음판넬 내부를 흡음형으로 적용	【반영】 ◦ 가설방음판넬 내부를 흡음형을 적용하여 발생 소음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p801, 증산4,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소통 강화, 저감방안 협약 및 대책 성실 이행 - 증산4,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고소음 공중 중첩 시 인접 구간 소음피해 가중이 불가피하므로 공기가 중첩될 경우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저감방안 협의·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각 사업의 수립 대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함 - 서울시는 양 정비사업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중재할 필요 있음	【반영】 ◦ 사업지구 인근 공사에정인 증산4 재정비촉진 구역과 공사기간이 중첩될 경우, 사업자 및 승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등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
		◦ p805, 이동식 방음벽의 적정 적용 및 돔형태의 에어방음벽 적용 고려 - 이동식 방음벽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사장비별 소음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전달경로상 회절이 발생하도록 적정 길이, 높이를 고려해 설치 적용 위치에 유념해야 함 - 인근 정온시설 고층부에 최대한 직접음이 닿지 않도록 설치 - 특히 공사장비의 이동에 따라 회절이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공사장비에 돔형태의 에어방음벽 적용도 적극 고려해야 함	【반영】 ◦ 가설방음판넬설치 후 목표기준 초과시 적용 가능한 건설장비에 대하여 돔 및 터널 형태의 에어방음벽을 적용토록 계획하였음	-
		◦ p807, 철거공 시 대안 대책 등 보완 - 철거공 진행 전 지하매설물 등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저감량 및 사업지구 중앙부부터 철거 등 대안 대책을 보완해야 함	【반영】 ◦ 현재 철거공사 시 사업지구 경계로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설방음판넬 설치에 기술적 또는 공간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재수립하고 변경협의 절차를 통해 철거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p809, 발파 시 모니터링 강화 - 현재 제시한 발파시 소음·진동 모니터링 지점(4개 지점) 이외에도, 다수의 정온시설이 공사경계구역에 인접해 있어 발파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므로 20m 이내의 주요 정온 시설은 모니터링 지점으로 추가하여 상시 관리 필요	【반영】 ◦ 발파구역과 인접한 정온시설 및 지하철 6호선 인근 정온시설에 계측기기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
		- 인접 건물 균열측정계 및 경사계 설치 위치 및 상세계획 제시		
		- 발파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기치 못한 영향을 방지하고 인접 건물의 영향정도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 p812, 건축공 시 저감대책 제시 - 건축공 시 적용한 지면 위의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이외에도 신축건축물의 위치, 높이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소음이 발생함 - 건축공 시 거푸집(알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공명음 및 공구류 소음 등)의 저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반영】 ◦ 건축물 공사 시 드롭다운시스템(Drop Down System) 공법을 적용하여 탈형소음을 최소화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p816, 운영시 야간 소음기준 준수 권장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 공동주택 실외 예측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음환경기준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를 준수하기를 권장함 - 이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목표기준이자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임	【반영】 ◦ 본 사업지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운영시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였음	-
		- 또한, 일부층에서(301동 29F 남동측 4~5층, 302동 29F 남동측 4~5층, 303동 24F 남동측 3~5층) 사후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기준의 주거지역 야간 58dB(A)를 초과함으로써 민원의 책임 소재 등의 잠재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현실적인 선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저감대책 수립을 권장하며, 특히 상기의 해당층에서 주민 입주 후 도로교통 소음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양전 해당층에 대한 소음도를 공지하고 분양가에 반영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	【반영】 ◦ 본 사업지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운영시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였음 ◦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소음 관련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소음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사전 안내토록 계획하였음	-
		- 운영 시 저감방안 설치 후 예측 소음도를 전 정온시설에 대해 제시할 것	【반영】 ◦ 운영 시 저감방안 설치 후 예측 소음도를 전 정온 시설에 대해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p825, 지하철 6호선 진동·구조소음 영향 예측 - 사업시행자는 지하철 6호선의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지하 건축물의 진동 및 구조소음 영향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인접 정온시설에서의 영향을 예측해야 하며, 목표기준의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반영】 ◦ 사업지구 동측으로 지하철 6호선이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지하철 진동·구조소음에 대하여 영향 예측 및 목표기준 초과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 준공 전 가장 인접한 정온시설의 지하층에 조사지점을 추가하여 지하철 진동·구조소음의 영향에 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함	【반영】 ◦ 준공 전 지하철 진동·구조소음의 영향에 관해 사후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 p825, 지하철 진동·구조소음 저감대책 - <그림 5.5.2-32>에 지하철 궤도와의 최단 이격거리를 표시할 것	【반영】 ◦ 지하철 궤도와의 최단 이격거리를 표시하였음	-
		- 방진매트 사양과 설계 자료(진동 및 구조소음 시뮬레이션/계산서)를 제시할 것	【반영】 ◦ 방진매트 사양과 설계자료를 제시하였음	-
		◦ p826,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 - 인정바닥구조의 경우 인정서 상의 성능에 비해 현장 시공 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량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소 3등급 이상인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할 것 -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준공 전 유형별 세대수의 2%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이를 5%로 확대할 계획이므로("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2023.12.11 참조) 가능하면 성능검사 세대수를 2%에서 5%로 확대할 것-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준공 전 유형별 세대수의 2%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이를 5%로 확대할 계획이므로("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2023.12.11 참조) 가능하면 성능검사 세대수를 2%에서 5%로 확대할 것	【반영】 ◦ 준공 전 층간소음에 대하여 단지 유형별 세대수의 2% 실측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소음 진동	◦ p830,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준공 전 인근 지하철 운영에 따른 진동 및 구조소음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추가할 것	【반영】 ◦ 준공 전 지하철 진동·구조소음의 영향에 관해 사후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
		◦ (심의자료 p34) 단지 내 신규도로에 관한 소음 영향 고려	【반영】 ◦ 단지 내 신규도로(증산서길)를 포함하여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하였음	-
		◦ (심의자료 p191) 가설방음판넬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 제시	【반영】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가설방음판넬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 후 검토결과를 제시 토록 하겠음	-
		◦ (심의자료 p196, 202) 미성아파트 쪽 자동모니터링 장비 추가 권장	【반영】 ◦ 미성아파트 부근 자동모니터링 장비를 추가설치 계획하였음	-
		◦ (심의자료 p212) 지하철 6호선 진동·구조소음 예측 및 목표 기준 초과시 저감대책 제시	【반영】 ◦ 운영시 지하철 6호선 운행에 따른 지하철 진동·구조소음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위락 경관	◦ (항목)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시행으로 경관 변화 예측·분석 - p.847-854 분석 결과가 '일부만 조망됨', '경관 변화 영향 없음', '미미함' 등 정성적인 표현이 많아 경관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함. 각 조망점별로 위압감 및 차폐감에 대한 '수직 각도' 또는 '가시율 감소 비율'과 같은 수치 분석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보완해야 함	【반영】 ◦ 대안 1,2,3 경관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각 조망점별 가시율 변화를 통해 위압감 및 차폐감을 정량적 수치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음	1169 ~ 1187p
		◦ 경관 시뮬레이션 정량화 및 통합 분석 - 각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수직 각도', '가시율 감소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포함하여 위압감 및 차폐감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함. 또한, 가로 녹시율 분석 결과를 각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내용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경관변화 분석을 수행해야 함		
		◦ (심의자료 235~) 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으로 인한 차폐율 변화에 따른 저감방안 제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치 대안 선정과정에서 차폐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시		
		◦ (심의자료 237~) 스카이라인 변화에 따른 저감방안은 주요 조망점에서 실제 인지되는 경관을 대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배치 대안 선정과정에서 고려사항으로 제시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위락경관	◦ (항목) 스카이라인 조화방안 검토 - p.870 사업지구와 인접 개발지 및 반흥산이 조망되는 지점에서 스카이라인 변화를 예측하여, 인공 스카이라인이 상승하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정량적, 객관적 분석이 부족하며, '조화롭다'는 판단의 기준과 평가를 보완해야 함	【반영】 ◦ 상위계획인 서울시 경관계획(2016)을 검토한 바, 사업지구는 주요 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있으며, 저층 주거지역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것으로 검토됨 -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증산4재정비구역)의 스카이라인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측되는 건축물 높이에서 각도를 측정하여 스카이라인 변화량을 분석하였음	1216 ~ 1218p
		◦ (항목) 스카이라인 등 각 항목 저감방안 적용 예측결과는 실제 지점에서의 적용 전/후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 - p.870 저감방안 적용 후의 효과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예: 스카이라인 변화량, 위압감/차폐감 감소율 등)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스카이라인 저감효과의 객관적 제시 - 스카이라인 저감방안 적용 후의 효과를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여, '조화롭다'는 판단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		
		◦ p852, 불광천 대안에서 바라보는 통경축 확보 방안 제시	【반영】 ◦ p852 조망지점은 서울시 경관계획 내 은평구의 조망명소로 지정된 외산교로 해당 지점에서의 불광천 대안지점을 선정하여 서측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이 존치하여 실질적 통경 및 개방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1214p
		◦ p862, 현재 연서중학교의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녹지 조성 방안 검토	【반영】 ◦ 연서중학교의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녹지조성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최초 사업시행계획과의 연속성, 불합리한 건축 배치계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따라 획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1206 ~ 1207p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위락 경관	◦ p861, 단지 내 보행축을 고려하여 배경 산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방안 제시	【반영】 ◦ 배치계획 수립시, 1단지 사이로 증산4재정비구역과 연결된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 보행통로에서 보행자 시점으로 자연 스카이라인인 반홍산이 조망되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 실시하여 제시하였음	1215p
		◦ (심의자료 238) 스카이라인 변화량의 경우 자연스카이라인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경관 영향을 분석하고, 자연스카이라인의 연결, 단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망축 등 확보 방안 제시		
		◦ (심의자료 244) 배경 자연스카이라인이 주요 경관자원이므로 사업대상지 내·외부의 조망축 확보 검토		
		◦ (항목) 위압감 및 차폐감 저감방안 제시 - p.859-860, 863 입면차폐율 분석 결과 사업시행 후 1.8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저층부 연도형 배치(근린생활 및 주민공동시설)를 통해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가로경관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저감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등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다소 부족함	【반영】 ◦ 입면 및 색채가 적용된 저층부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으며 투시성있는 재료를 통해 위압감을 완화하고 주거동과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감을 형성하였음	1206p
		◦ 위압감 및 차폐감 저감 방안 효과 시각화 - 저층부 연도형 배치 등의 저감방안이 위압감 및 차폐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이미지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심의자료 240) 저층부 경관 형성은 건축물의 색채·입면디자인보다 외부공간의 식재·자연성·캐노피 확보 등을 통한 시선 분산, 위압감 완화 등의 저감방안 제시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일조장애	◦ (항목) 사업지구내 폐쇄형, 일부 폐쇄형 동배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 미반영됨, 전체 1,894세대 중 58.6%인 1,109세대가 일조만족 세대로 나타남. 일조만족률이 30% 이하인 동이 5개나 되어 추후 평면계획 및 배치계획의 수정 등을 통하여 일조환경의 향상을 위한 저감대책 필요하며 사전 공고 및 분양가 차등 적용 등의 보상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반영】 ◦ 30% 이하인 동의 만족률 개선을 위하여 층수 조정 및 저층부 필로티를 계획하여 30% 이하인 동에 대한 개선안을 선정하였으며, 일조권 피해에 대한 사전 공고 등 보상계획을 제시하였음	-
		◦ (심의) 본 건물은 정북방향 일조 기준을 충족하나, 시뮬레이션상 3단지 고층매스에서 투영되는 그림자가 1단지 102동·103동 일부 저층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해당 세대의 일조시간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따라 3단지 북서측 대지경계부의 완충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함. 또는 대상세대의 용도 조정 등의 고려가 필요함(비거주용도 또는 필로티)	【반영】 ◦ 3단지 고층매스에서 투영되는 그림자 영향이 일부 저층세대에 미치는 것에 대비하여 저층부에 근린생활 시설, PIT층 및 필로티를 계획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함	-
		◦ (심의) 추가침해지역의 보상방안·민원해결방안 구축 제시 필요	【반영】 ◦ 추가침해지역의 보상방안 및 민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음	-
		◦ (심의) 일조만족도 30% 미만동은 만족도 상승을 필히 고려할 것	【반영】 ◦ 30% 미만 동에 대한 개선안으로 층수 조정을 계획하였음	-
	인구주거	◦ (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예측 - 사업시행 전의 활동인구도 산정하고 사업시행 후의 활동인구와 비교해 사업시행에 따른 변화를 분석 바람	【반영】 ◦ 사업시행 전의 활동인구 산정 및 사업시행 전·후 활동인구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 (항목) 인구밀도 증가에 대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변화 검토 - 반영 필요	【반영】 ◦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변화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기타	○ 녹색에너지과(온실가스) ◦ 건물 신축 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적용 - 설비용량 및 설계기준 등을 준수하고, 설치 관련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을 따름 - 연면적 30,000㎡이상 비거주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설치 - 재생열 의무화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연중 상시 냉·난방이 필요한 부대복리 시설 등에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열에너지 시스템(지열 등 재생열) 적극 발굴·활용 권장 ◦ 연료전지 설치 시 생산된 전기 및 열(온수)은 건물의 1차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시공 및 운영	【반영】 ◦ 사업지구의 주용도는 주거시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 전력 공급을 위해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열 및 연료전지 설치를 계획함 ◦ 연료전지를 부대시설의 1차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설치규모에 따른 발전량은 한계가 있어, 부대시설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토록 계획함	38~74p
		◦ 신축 건축물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데이터(에너지생산량 등)를 '서울시 에너지 정보 통합시스템'에 연계(데이터 전송비 자부담) ※ 서울시 에너지 정보 시스템 내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으로 구축 완료 이후 연계 예정 < 관련 법·조례·규정 등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반영】 ◦ 현재 구축 중인 서울시 에너지정보시스템 내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사업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자료를 요청할 경우 연계토록 하겠음	111p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별시	기타	○ 자원순환과(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장폐기물】 ◦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배출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 운영 시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분리·보관하되, 특히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플라스틱,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반영】 ◦ 사업시행 전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은평구청에 신고하고, 공사시 충분한 분리수거 장소를 확보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및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겠음	-
		【지정폐기물】 ◦ 폐유,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발생 시 배출자 신고 및 적정·보관 처리 < 관련 법·조례·규정 등 > ◦ 「폐기물관리법」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반영】 ◦ 폐유,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발생시 배출자 신고 하고, 적정 보관 및 처리토록 하겠음	-
		○ 물재생시설과(수질) ◦ 공사 중 침사지의 방류수질(SS 100mg/L) 목표는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제15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농도보다 낮은 농도를 목표수질로 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 < 관련 법·조례·규정 등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반영】 ◦ 방류수질(SS 100mg/L) 목표를 기준보다 낮은 90mg/L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울특별시	기타	○ 자연생태과(동·식물상) ◦ 해당 사업지는 불광천, 반흥산에 접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진관동, 봉산), 야생생물보호구역(진관)에 인접하고 있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함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유출토사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주기적인 살수, 가설 방음판넬 상단부 비산방진망 설치, 침사지 및 가배 수로를 설치 및 운용 예정임	-
		◦ 인공구조물(방음벽, 건축물 등)에 의한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및 방안 마련	【반영】 ◦ 운영시 방음벽 설치구간에 패턴적용을 통해 야생 조류 충돌 피해를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작성하여 자연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람(작성 서식은 자연생태과 담당에게 문의) < 관련 법·조례·규정 등 >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방지 조례」 제5조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 지침」 (환경부, 2024)	【반영】 ◦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서식으로 작성하여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 서류를 자연생태과로 통보할 계획임	-

나. 은평구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건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은평구	기후 환경 과	○ 토양오염【맑은환경팀 351-7627】(p.496~529) ◦ 본 사업 대상지는 재개발사업 예정지로서 공사장 구역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토양 오염 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한 지점이 있으므로, 토목공사가 전까지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반영】 ◦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후 토양오염 추가 조사 진행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초과 시 지자체에 보고하고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음	-
		○ 에너지 저감 관리【에너지관리팀 351-7643】(p.271~272, p.285~306) ◦ 에너지 저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조명기기를 적극 설치할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부터 제16호 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함	【반영】 ◦ 에너지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 전지)와 LED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계획하였음	-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에너지관리팀 351-7645】(p.323~324) ◦ 『친환경자동차법』 제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따라 총주차대수 50면이상 (기계식 주차면 제외), 세대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하였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은평 구	기후 환경 과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따라 2022.1.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총주차대수의 2%만큼의, 2022.1.28.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총주차대수의 5%만큼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2026.1.27.까지 지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따라 2022.1.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총주차대수의 2%만큼의, 2022.1.28.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총주차대수의 5%만큼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6.1.27.까지 설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에 의하면 의무설치 대상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개수는 전체 충전시설의 10% 이상만큼 설치하여야 함(소수점 이하 반올림)	【반영】 ◦ 전체 주차대수 중 12.64%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12.64%를 충전시설로 계획하였음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과의 이격거리【에너지관리팀 351-7642】(p.497~5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아래 시설은 주유소의 방화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25m 이상 -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m 이상	【반영】 ◦ 본 사업지구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함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건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은평구	기후 환경 과	○ 도시가스 공사 시 법적 사항 준수【에너지관리팀 351-7642】 (p.542~548) ◦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공사 시 착공 전까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고 의견을 종합한 후 구청에 승인받을 것	【반영】 ◦ 관련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공사시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는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릴 것	【반영】 ◦ 철거 공사시작 7일 전까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리도록 하겠음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 및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할 것 -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순회점검 및 일일점검과 함께 비상 연락망 및 긴급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반영】 ◦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가스사업자와 협의 및 합동감시체제를 구축, 순회 점검 및 일일점검, 비방연락망 및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 조치 및 손상 방지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설 기준 및 안전규정을 이행할 것	【반영】 ◦ 관련 규칙에 따라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기준, 안전규정 등을 이행토록 하겠음	-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건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은평 구	기후 환경 과	○ 소음·진동【생활환경팀 351-7632】(p.717~833) ◦ 사업지구 주변 일대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상업시설, 종교시설, 보육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공사장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바, 평가서에 계획된 4개소 발파 소음·진동 4개소 모니터링 계획을 전 공사기간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소음·진동전문 측정업체 등을 통한 소음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4개 지점과 발파시 5개 지점에 대해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측정업체를 통해 소음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임	-
		◦ 증산로와 인접한 부분에 대한 도로소음도 주야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준공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벽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이를 관리할 것(국토교통부 고시) ※ 영향평가서 p.780 H 7m 방음벽 운영을 권고	【반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5층 이하 실외소음도 기준 65dB(A) 미만, 6층 이상 실내소음도 45dB(A) 만족하기 위하여 방음벽 H=9.0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

다.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별도 제출의견 없음)